

## 대한민국에서의 강제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강제처분에 협조하는 것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강제처분이 강요되거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검사를 강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제는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집행하려는 법률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법의 일부를 소홀히 하거나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동안 스스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을 잘 알면잘못 집행된 강제처분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감염병, 특히 코로나 19 검사에 대한 강제처분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설명된 방법은 다른 여러 유형의 강제처분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공무원이 법의 자구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부인:** 이 문서는 의견을 제공할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 하에, 그리고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제 1 단계.** 처음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저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서 감염병예방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따르고 싶다” 는 의사를 말하세요.

- i.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소속, 상사 이름, 상사 전화번호)를 요청하세요.
- ii.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예방법 및 행정절차법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 iii.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법률에 따른 시민의 권익을 이해하는지 물어보세요.
- iv.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법률을 따라 강제처분을 집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 v. 담당 공무원에게 당신에게 강제처분을 집행할 때 이들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데 동의하는지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 라고 대답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귀하의 답변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하세요. 담당 공무원에게 법규 준수를 요청하거나 상사와의 입회를 요청하세요. 이

강제처분이 감염병예방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얻기 전까지는 **제 2 단계**로 이동하지 마세요.

**제 2 단계.**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고 말하세요. 특히, 당신이 감염병예방법 제 2 조의 제 14 항, 제 15 항 또는 15-2 항에 각각 정의된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간주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저는 감염병예방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해당 지위를 확인하고 싶다” 고 말하세요. 이 확인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i. 관련 감염병환자가 감염병예방법 제 16-2 조 및 제 42 조에 따른 실험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 (실험실 검사가 현재 해당하는 특정 변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의 경우 감염병환자는 어떤 변종에 감염되었나요? 실험실 검사가 이 특정 변종에 맞게 설계되었나요?)
- ii. 당신이 관련 감염병환자와 “가까운 거리” (즉,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따라 2m 이내)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CCTV 영상 확인 또는 우려 위치에서 당신이 바이러스 입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CCTV 영상 확인.



- a.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 6 조와 행정절차법 제 5 조 및 제 21 조 제 1 항이 시민에게 이 정보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고 말하세요.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할 수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험실 검사 결과와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 고 말하세요.
- b. 담당 공무원은 “강제처분이 행정절차법 제 21 조 제 4 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긴급한 처분'에 해당하여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성을 이유로 해당 정보를 생략하는 것은 귀하가 저를 감염병의심자로 간주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고 말하세요. “이와 달리, 저는 귀하가 저를 감염병의심자로 관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 고 말하세요. “다시 말하면, 강제처분이 실제로 저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의 ‘긴급한 처분’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고 말하세요. “저는 자신의 법적 지위가 감염병예방법 제 2 조 제 14 항, 제 15 항

또는 제 15-2 항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강제처분을 받겠다” 고 말하세요.

- c. 담당 공무원에게 “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 법적 지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자택에서 자발적으로 기다리겠다” 고 말하세요.  
(자가격리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강제처분이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채 강제처분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 d. 공무원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처분을 받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폭력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제 3 단계**로 이동하여 상황을 일단 해결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찰과 담당 공무원 상사에게 신고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권한 범위를 넘어 행동하고 있으며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세요. 경찰과 담당 공무원 상사가 도착하면 **제 1 단계**로 돌아가세요.)

.....  
**제 3 단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된 정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강제처분에 사용된 실험실 검사 종류를 확인하고 싶다” 고 말하세요. (다시 말하면,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데 어떤 종류의 실험실 검사가 사용되나요? PCR 검사, 항원 검사 또는 다른 검사인가요?)

- i.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감염병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실험실 검사가 사용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고 말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 또는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하 통칭하여 “PCR”)이라고 하면 **제 4 단계**로 이동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모르거나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항목(ii)으로 이동하세요.
- ii.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강제처분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실험실 검사가 사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고 말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PCR 이라고 하면 **제 4 단계**로 이동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기본 정보를 모르거나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거나 알려주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즉시 담당 공무원 상사의 입회를 요청하세요. 실험실 검사 종류를 알기 전까지는 강제처분을 진행하지 마세요.
- iii. 담당 공무원이 PCR 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제 5 단계**로 이동하세요.

**제 4 단계** 담당 공무원에게 “PCR 실험실 검사는 병원체를 확인할 수 없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제 16-2 조 및 제 42 조를 준수하지 않다” 고 말하세요. (PCR 검사로는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RNA 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RNA 는 병원체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병원체는 RNA 와 같은 유전물질뿐 아니라

단백질로도 구성됩니다. PCR 검사는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CR 은 해당 병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견된 유전물질은 소위 그 바이러스의 전체 게놈에서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PCR 이 검출한 것이 실제로 바이러스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제조업체 및 당국은 PCR 검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 말하세요.

- i. 코로나 19 PCR 검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 제조업체 SD 바이오센서(Standard M NCoV) 및 씨젠(Allplex TM)의 진술이 나왔다.
- ii. 코로나 19 PCR 검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울의대 코로나 19 과학위원회 박완범 교수의 진술이 나왔다.
- iii. 코로나 19 PCR 검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의 진술이 나왔다.
- iv. 코로나 19 PCR 검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의 진술이 나왔다.
- v. 코로나 19 PCR 검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의 진술이 나왔다.
- vi. 코로나 19 PCR 검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스웨덴 공중보건국의 진술이 나왔다.

(위의 항목 i-vi 에 해당하는 진술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진단 키트 제조업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실제로 코로나 19 검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항목 vi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진술은 한국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6 단계**로 이동하세요.

**제 5 단계.** 담당 공무원이 PCR 이외의 실험실 검사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다른 종류의 검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i. 담당 공무원이 NAAT(핵산증폭검사)라고 하면 PCR 검사이거나 PCR 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검사이므로 **제 4 단계**로 돌아가서 “PCR” 이라는 단어를 “NAAT” 로 바꾸세요.

ii. 담당 공무원이 항원 검사라고 하면 PCR 과 유사한 이유로 비준수이므로 다음을 읽은 후 **제 4 단계**로 돌아가세요. PCR 검사와 항원 검사의 차이점은 PCR 검사는 유전 물질만 검출하는 반면, 항원 검사는 단백질만 검출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검사로는 병원체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항원 검사는 PCR 검사와 마찬가지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iii. 담당 공무원이 항체 검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항체 검사는 병원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말하세요. 사실 항체 검사는 감염병 발병 후 며칠이 지나면 면역 체계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단백질(예: IgM 및 IgG)을 검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항체는 감염이 시작된 지 몇 주 후에 최고조에 달하며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체 검사에서 검출된 항체로는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iv. 담당 공무원이 바이러스 배양 검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바이러스 배양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결과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는 부적절한 검사 방법이다” 고 말하세요. 또한 바이러스 배양 검사는 병원체나 전염성을 확인할 수 없고 순수 바이러스가 아닌 수많은 불순물로 배양된 세포에서 세포 변성 효과(CPE)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PE 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CPE 는 세포 배양에 항생제를 첨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CPE 는 신체 외부의 환경에서 표본에 유도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E 는 세포 내의 내인성 과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CPE 는 코로나 19(공식 명칭은 SARS-CoV-2) 이외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포 배양물에는 바이러스 외에도 수많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으로 봐도 병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포 배양에는 코로나 19 와 거의 동일한 크기, 모양, 밀도를 가진 수많은 다른 바이러스(무해한 바이러스와 병원성 바이러스)와 엑소좀 등 내생적으로 생성된 세포외 소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v. 가능한 유일한 다른 검사는 폐 CT 스캔이지만, CT 스캔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검자가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CT 스캔은 병원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CT 스캔은 COVID-19 이외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병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변은 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 폐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 6 단계.** 담당 공무원에게 “강제처분(조사, 검사, 의학적 진단, 격리 등)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감염병환자는 먼저 병원체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에 부합하는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하세요. 법에 부합하는 실험실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담당 공무원이 귀하가 감염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부합하는 실험실 검사로 강제처분을 받는 데 동의하세요.

현실은 법에 부합하는 실험실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PCR, 항원, 항체, 바이러스 배양 검사 및 CT 스캔은 모두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강제처분을 받고 싶지 않다면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 검사를 황금 표준으로 계속 의존하는 한, 자국의 법률을 계속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감기, 인플루엔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진단의 유일한 황금 표준은 질병의 증상 발현입니다. 누군가 질병의 증상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방법과는 달리,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불법적인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만 검출할 수 있는 '무증상 질환'과 '무증상 감염'이라는 개념은 코로나 19 패닉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디스토피아적 악몽에 빠뜨린 이유입니다. 실제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무증상 보유자'를 사냥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 인력을 들여 시민과 어린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제 7 단계(긴급 상황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법률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담당 공무원이 귀하를 강제로 구금(격리 등)하는 경우, 즉시 감염병예방법 제 42 조 10 항에 따라 인신보호를 청구하세요. 또한 폭력 행위를 통해 물리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강제처분의 어떤 부분에도 동의하지 마세요.

\*링크(영문만 해당):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criteria-for-releasing-covid-19-patients-from-isolation>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07호, 2021. 10. 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제 6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 16 조의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 42 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3. 감염 여부 검사

---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제 5 조(투명성)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1 조(처분의 사전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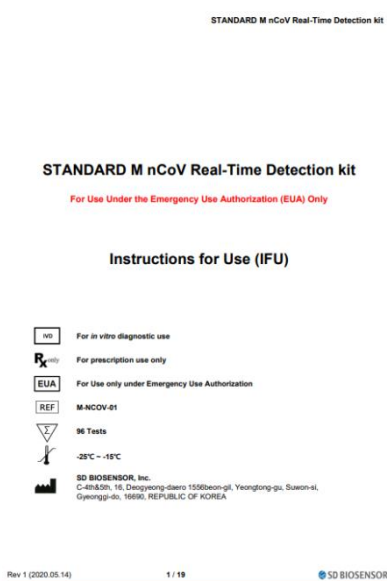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 3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27 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들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들은 제 1 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들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에스디바이오센서 SD BIOSENSOR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https://www.fda.gov/media/137302/download>

Nucleic acid may persist even after the virus is no longer viable.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핵산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Syndrome (MERS) and more serious diseases such as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This kit is helpful for the auxiliary diagnosis of SARS-CoV-2 infection. The test results are for clinical reference only and cannot be used as a basis for confirming or excluding cases alone.

이 키트는 SARS-CoV-2 감염의 보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결과는 단지 임상 참조용이며, 이

검사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plex™ 2019-nCoV Assay

씨젠 Seegene

Allplex 2019-nCoV Assay

<https://www.fda.gov/media/137178/download>

Allplex™ 2019-nCoV Assay  
(version 2.2; April 15<sup>th</sup>, 2021)

(Cat no. RP10250X / RP10252W)

Instructions for Use

Detection of viral RNA may not indicate the presence of infectious virus or that 2019-nCoV is the causative agent for clinical symptoms.

바이러스 RNA 의 검출은 감염성 바이러스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RNA 의 검출은 SARS-CoV-2 가 임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For *in vitro* diagnostic use  
For Emergency Use Authorization Only  
Prescription Use only

Seegene



## SNU Responds to COVID-19



서울대학교

홈 연구 영상 대응 매뉴얼 및 공지 언론보도 학술행사 연구진 카드뉴스

ENG

### 연구

Medical Science

코로나-19 확진자가 재감염될 수 있는가?

2020.07.31.



박완범 교수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위원  
서울의대 감염내과



박완범 교수

서울의대 코로나 19 과학위원회 위원

서울의대 감염내과

<https://www.snu.ac.kr/coronavirus/research?md=v&bbsidx=128818>

금년 4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 재양성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163건이며, 격리해제자의 2.1%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양성 사례는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COVID-19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은 바이러스 입자 자체를 검출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RNA 유전자를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식 가능한 바이러스 없이 유전자 찌꺼기만 있어도 검사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죽은 바이러스' 유전물질 검출된 것"(종합)



**자료 설명하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오명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자료 발표를 하고 있다. 2020.4.29 kure@yna.co.kr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이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095700017>

오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진단을 위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PCR' 검사를 이용하는데, 재양성 사례는 PCR 검사에 내재한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CR 검사로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데다, 상피세포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양이 적으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부연했다.



# 정은경 "산발적 감염 계속되는 건 무증상 감염자

2020.06.19 17:05

0 |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 ♡
- f
- t
- 📺
- 📱
- 📧
- 🌐
- URL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7594>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는데,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이 오랫동안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PCR 만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바이러스 배양 검사와 PCR 결과를 연계 분석한 근거자료를 갖고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ZouJk1LqP2k>

많은 임상 전문가들은 가능성의 하나로 감염력은 없거나 떨어지는 어떤 바이러스에 남아있는 조각들이 리얼 타임 RT-PCR의 증폭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



Publicerat material	
Sök publikationer	
Borttagna publikationer	+
Kundtjänst och köpvillkor	
Remisser och yttranden	+
Konferensdokumentation	
Föreskrifter och allmänna råd	+
Utblick folkhälsa	+
E-utbildningar	

## Vägledning om kriterier för bedömning av smittfrihet vid covid-19

Folkhälsomyndigheten har tagit fram nationella kriterier för bedömning av smittfrihet vid covid-19.

PCR-tekniken som används i test för att påvisa virus kan inte skilja på virus med förmåga att infektera celler och virus som oskadiggjorts av immunförsvaret och därför kan man inte använda dessa test för att avgöra om någon är smittsam eller inte. RNA från virus kan ofta påvisas i veckor (bland månader) efter insjuknandet men innebär inte att man fortfarande är smittsam. Det finns också flera vetenskapliga studier som talar för att smittsamheten vid covid-19 är som störst i början av sjukdomsperioden.

De rekommenderade kriterierna för bedömning av smittfrihet grundar sig därför på stabil klinisk förbättring med feberfrihet i minst två dygn och att det gått minst sju dagar sedan symptomen började. För de som haft mera uttalade symtom gäller minst 14 dagar sedan insjuknandet och för de allra sjukaste, individuell bedömning av behandlande läkare.

Kriterierna har tagits fram i samarbete med företrädare för specialtetsföreningarna inom infektionsmedicin, klinisk mikrobiologi, hygien och smittskydd. Dessa har senast diskuterats i gruppen vid möte 19 april 2021 med anledning av de nya virusvarianterna. Bedömningen blev då att ingen uppdatering behövdes. Rekommendationerna kommer att uppdateras allteftersom ny kunskap om smittsamhet vid covid-19 tillkommer.

### Öppna publikationen

Läs publikation

### Beställ

Denna publikation finns ej för beställning.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publicerat-material/publikationsarkiv/v/vagledning-om-kriterier-for-bedomning-av-smittfrihet-vid-covid-19/>

## 코로나 19 감염 여부 평가 기준 안내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국가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되는 PCR 기술은 세포 배양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와 면역 체계에 의해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검사를 사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RNA 는 감염 후 몇 주(때로는 몇 달) 동안 검출될 수 있지만 사람이 여전히 감염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19 의 감염성은 발병 초기에 가장 높다는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